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22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다음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구조사업에"로 하고 제2항 중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분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제37조 중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생략	제7조【군공유재산심의회】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	1.	1.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3.	3.	3.
제11조【관리 및 처분】①, ② (생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①, ② (현행과 같음)	③.....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2. 시가 1천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④(생략)	④(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략)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중략)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의안번호	제 43 호
의결년월일	1994. 12

'94 行政事務監查計劃

'94 行政事務監查特別委員會

□ 監事의 目的

각종 안전 및 '95년도 예산안 심사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 실태를 파악,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켜나가고 불합리하고 소비적인 요소는 개선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적

정화, 능률화, 예산의 효율적 운영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하고자 함.

□ 根 據

-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서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監查期間

- '94. 12. 3 ~ 12. 9. (7일간)

□ 監查場所

- 서산군의회 소회의실 (3층)

□ 監查班 編成

- 1개반 9명

위원장	간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유규일 (음암) (1인)	서경원 (부석) (1인)	김관기(고북) 김재경(대산) 김진오(운산) 박찬교(팔봉) 이상훈(인지) 이병섭(해미) 이창배(성연) (7인)	사무과장 이관엽 전문위원 김지영 의사계장 김영수 지방행정주사보 박성현 지방행정주사보 한성교 (5인)

□ 監查對象事務

- 지방자치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한 자치단체 사무의 전반
 -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 ※ 기관위임사무는 제외
- '94년도 집행된 행정사무를 중점 실시